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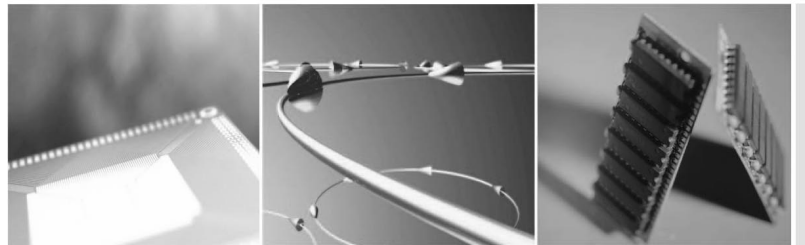
KISDI 이슈리포트

통신서비스 미국시장 진출전략: FCC 외국인지분제한과 공익성심사를 중심으로

2005. 3. 21

안준성

Korea Information Strategy Development Institute



요약

- 1 미국통신시장 진출러쉬
- 2 FCC 외국인지분제한 사례분석
- 3 이슈별 법률검토
- 4 미국통신 시장개척 로드맵
- 5 시사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KOREA INFORMATION STRATEGY DEVELOPMENT INSTITUTE

안준성

- junie@kisdi.re.kr, 02-570-4127
- 미 메릴랜드 주 변호사
- 미 변호사협회(ABA)
- 미 연방통신변호사협회(FCBA)
- 미 연방통신위원회(FCC) 국제국(IB) 근무
- Conrad Burns 미연방상원위원 사무실 근무
- John Marshall Law School(LL.M.) IT & Privacy Laws
- Michigan State University School of Law(J.D.)
- George Washington University(M.A. Telecommunications)
- Michigan State University(B.A. Telecommunications)
- 정보통신부 통상법률자문관
- 현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
- 저서: 「Mobile Killer Applications in S. Korea: Implications for the U.S. Policymakers」,
「e-Korean DSL Policy: Its Implications to the United States」
「디지털 음악저작물 유통관련 쟁점 및 정책 제언-MP3폰을 중심으로」 등

◆ 본글의 내용은 필자의 개인적 견해로서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의 공식입장과는 무관합니다. ◆

요 약

국내 통신시장이 급성장함에 따라 포화상태에 이르면서, 최근 해외시장 진출이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정부규제와 정책이 현이하게 다른 해외시장 진출은 그리 쉽지 않은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상대국가 통신규제에 관한 바른 이해가 없이는 매우 어려울 것이다. 미국은 경제적으로 우리나라의 제2교역국이며, 정치적으로도 매우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오고 있다. 최근 한·미FTA의 중요성이 새삼 부각되면서 미국통신서비스 시장에 대한 관심도가 한층 높아지고 있다. 이 리포트는 이에 일조하고자 통신서비스 미국시장 진출방향을 FCC관련규정과 결정을 통해서 제시한다.

한국이 WTO가입후, 통신사업자에 대한 외국인 지분제한이 주요 통상쟁점이 되어왔다. 기간통신사업자에게만 적용되고 있는 외국인지분제한(49%)에 대한 관심이 증가되면서, 최근 간접지분제한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또한 90년대에 중단되었던 한·미FTA에 관한 논의제기가 활발해지는 가운데, 미국통신규제에 대한 바른 이해가 절실할 때이다. 미국은 1912년 통신법(Radio Act of 1912)부터 수차례의 개정을 통해서 오늘의 외국인지분제한제도를 완성했다. 특이한 점은 간접지분에 대해서만 공익성 심사를 적용한다는 사실이다.

통신서비스 미국시장 개척에 관련된 주요쟁점으로는 FCC 외국인지분제한과 공익성심사를 들 수 있다. 우선 FCC 외국인지분제한은 유선사업자에는 적용되지 않고, 무선사업자에만 적용되는 비대칭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음을 주목해야 한다. 둘째, 공익성심사는 미통신법의 법적 근간이 되는 광범위한 개념으로 이에 대한 명백한 이해가 필수적이다. 외국인지분제한과 공익성심사에 대한 FCC의 최근 결정을 근거해서, FCC가 어떻게 공익성심사제도를 통해서 통신시장의 외국인투자 및 경쟁을 촉진시키려는가를 검토한다.

본 리포트는 현재의 FCC 정책적 쟁점들을 이해하고 미국통신 시장개척을 위한 방안으로 i) 인공위성과 해저케이블을 사용하여 직접 통신서비스 제공, ii) M&A 등을 통해서 미국통신회사의 주식을 직접 매입, iii) 미국지주회사를 통해서 간접지분을 소유하고 경영에 참가하는 방법, iv) 미국시장에 한국브랜드를 가지고 직접 들어가는 방안을 제시한다.

1. 미국통신시장 진출러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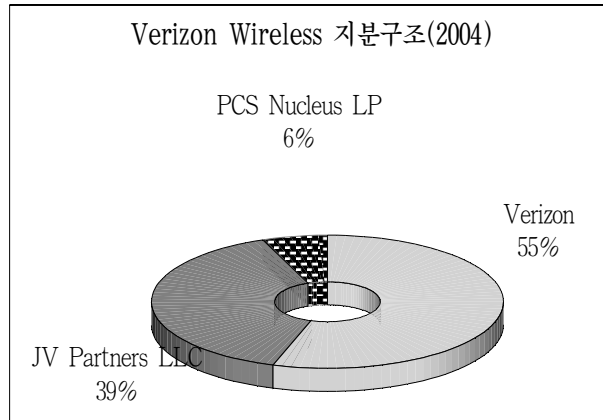
- 국내 통신시장의 포화상태와 과다경쟁으로 해외시장 개척이 새로운 화두로 떠오름
 - 2005년 2월 SKT는 최초로 미국 무선통신시장에 진입하고 ISP인 어스링크(Earthlink)사와의 공동투자 형식으로 MVNO서비스를 제공
 - 2005년 9월부터는 미국전역에 무선서비스를 제공할 목표
 - KT는 재판매형식의 부가통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기간통신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전략적 움직임
- 국내 통신사업자인 KT와 SKT가 미국내 기간통신사업에 진출하려는 글로벌 전략이 최근 가시화됨
 - 미국통신서비스 시장접근에 관한 법률적 이해부족
 - 미국 통신법상의 외국인 지분제한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
 - 한·미FTA관점에서 향후 어떻게 미국 통신시장에 수월하게 접근할 것인가에 대한 전략 필요
- 급변하는 미국 무선통신시장
 - Cingular Wireless(2위)가 AT&T Wireless(3위)를 합병 인수함으로써, 미국 최대 무선사업자로 등극(2004년 12월)
 - 최근 Sprint PCS(4위)가 Nextel(6위)과의 합병으로 3위
- 미국 통신시장 진출방향
 - 인공위성을 통한 국경간 공급(Mode 1: Cross-border Supply)과 RBOC 등의 미국 통신사업자와의 제휴를 통한 상업적 주재(Mode 3: Commercial Presence)로 기간통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
 - 국내 통신사업자들이 미국 통신사업자의 직접지분을 매입하거나, 미국내 지

- 주회사(U.S. holding company)를 설립하여 간접적으로 지분 매입가능
- 미국 유선사업자에 대한 외국인 지분제한이 존재하지 않으나, 무선사업자에
서 대해서는 직접(20%)과 간접(25%) 지분제한이 존재
 - FCC는 간접지분제한(25%)을 초과하는 경우, 공익성심사를 실시하고, 공익
에 부합되는 경우, 무선사업자의 허가취소 또는 거절할 수 있음

2. FCC 외국인지분제한 사례분석

□ Vodafone-Verizon Wireless 사례

- Verizon Wireless의 구조
 - 법적 이름은 Cellco Partnership이며 Verizon Wireless의 이름으로 무선서비스를 제공(Cellco Partner d.b.a. Verizon Wireless)
 - Verizon Wireless는 주식회사형태로 상장되어 있지 않고 합자회사(limited partnership)형태로 구성
 - 자금부족으로 거둬진 상장실패(2003)
- 외국인 지분현황
 - 영국법인인 Vodafone은 Verizon Wireless의 지분을 간접으로만 45% 소유
 - Verizon Wireless에 대한 직접지분 없음
 - 간접지주는 PCS Nucleus, LP(6%)와 JV Partners, LLC(39%)
 - Verizon은 나머지 55%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으며, 9명으로 구성된 이사회에서 5명을 선출할 수 있는 임명권을 보유하고, affirmative control를 행사
 - FCC의 외국인 간접지분 제한(25%)을 초과하므로, 통신법 제310조의 공익성 심사제도 적용대상
- Vodafone의 미국개척 전략
 - 직접지분의 소유없이 간접지분만 소유
 - Vodafone은 최근 AT&T Wireless의 합병포기후, Verizon Wireless 투자집중



□ Cingular-AT&T Wireless M&A 사례

○ Cingular Wireless의 구조

- Delaware주법에 의해서 설립되고, 본부는 Georgia주 Atlanta에 있음
- RBOC인 SBC와 BellSouth가 50:50으로 투자하여 Cingular라는 합작회사 (joint venture)를 설립(2000년)
- Cingular는 지주회사로만 존재하고, "Cingular Wireless LLC"라는 유한회사 (limited liability company)를 Delaware주에 설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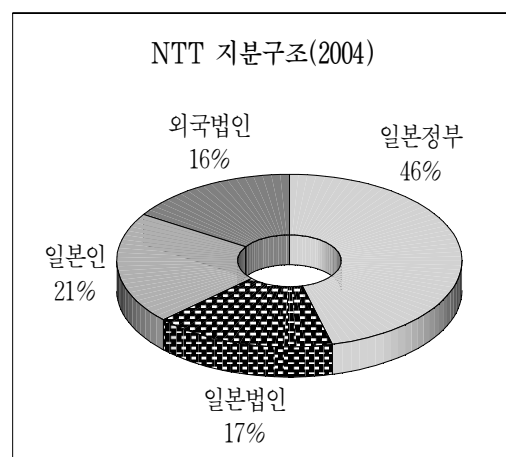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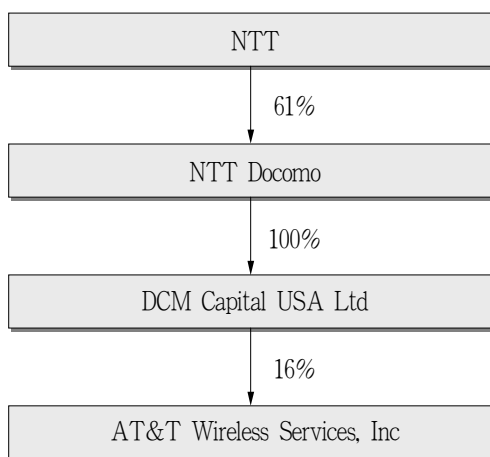
○ AT&T Wireless의 구조

- Delaware주법에 의하여 설립되고, 본부는 Washington주 Richmond에 위치
- AT&T로부터 자회사주매분(spun-off)과정에 설립되고(2001년 7월), NTT Docomo는 spinoff과정에서 16%의 간접지분을 매입, 최대주주로 등극
- NTT Docomo를 제외하면, 10%이상의 지분을 소유한 주주는 없음

○ Cingular Wireless와 AT&T Wireless 합병

- AT&T Wireless는 합병후 Cingular Wireless의 100% 간접 종속회사(indirect subsidiary)가 되며, "Cingular"의 브랜드명은 계속 사용

- 합병후, SBC(60%)와 BellSouth(40%)가 소유권지분을 가지며, 투표권은 각각 50% 나누어 가짐, 두 회사 모두 사실상 지배력(de facto control)¹⁾을 소유
- Cingular-AT&T Wireless 합병의 의미
- 대부분 무선사업자의 합병인 경우, FCC는 미국전역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새로운 경쟁자를 만든다는 의미에서 승인
 - 그러나, Cingular를 소유하고 있는 두 모회사인 SBC와 BellSouth는 각각 미국내 제2, 제3의 유선사업자로서, FCC선례들과는 다름
 - Cingular와의 합병으로 독립무선사업자(independent mobile provider)인 AT&T Wireless가 없어짐
- 미통신법 214(a)와 310(d)하에서 공익성심사
- 2개의 거대한 유선사업자(SBC와 BellSouth)의 합병을 통한 공익성심사과정
 - FCC는 새로운 형태의 유무선간의 경쟁(inter-modal competition)에 대한 이슈 지적
 - FCC는 공익에 미치는 해(public harm)가 존재하는 것은 인정하나, 공익(public benefits)이 더 많다는 논리로 합병승인



1) 47 CFR §63.09(b) 참고

- NTT Docomo의 미국개척 전략
 - NTT Docomo는 자사 영국법인(DCM Capital USA, Ltd)을 통해서 AT&T Wireless의 간접지분을 16% 매입
 - NTT Docomo는 미통신법 310조(b)(3)의 외국인지분제한을 피하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20%미만의 주식만을 매입
 - AT&T Wireless의 이사회를 통해서 충분한 영향력 행사
 - NTT Docomo가 DCM Capital의 100% 소유하므로, AT&T Wireless의 16%의 지분을 간접 소유
 - FCC는 NTT가 NTT Docomo의 61%의 지분을 소유함으로써, AT&T Wireless의 16%의 지분을 간접 소유함으로 봄²⁾
- ※ 일본정부는 NTT법을 통해서 1/3이상의 정부지분(46.07%)을 소유하고 있으며, 동법에서는 NTT에 대한 외국인지분을 1/3로 제한하고 있음

□ Deutsche Telekom-Voicestream M&A 사례

- Voicestream의 구조
 - 상장된 Delaware 주식회사, 본부는 Washington주 Bellevue에 위치
 - 미국내 7번째로 큰 GSM서비스 회사(2000년)
 - GSM-PCS서비스사업자(Ominpoint Corp. & Aerial Communications, Inc) 합병
- DT의 구조
 - 상장된 독일 주식회사로 본부는 Bonn에 있음
 - 독일내에서 제일 큰 유선사업자이며 T-Mobile이라는 무선회사를 통해서 유럽시장 진출

2) 47 CFR §63.09 Note 2 참고

- T-Mobile은 독일내 제2 무선사업자(시장점유율 39%)이며, Voicestream과 같은 GSM-PCS서비스제공
- 독일정부는 DT의 60% 투표권을 보유(2001)
- DT는 Voicestream과 Powertel과의 합병후 정부지분률을 60%에서 45%대로 낮출 예정
- Sprint PCS에 9%의 지분소유(2001)

- DT와 Voicestream 합병
 - DT는 50억달러를 투자하고, Voicestream 공모주 100% 매입
 - 합병전 Voicestream은 30.6%의 외국인지분보유
 - 홍콩지주회사인 Hutichson Whampoa는 FCC로부터 Voicestream의 30.6% 간접지분 승인획득(Voicestream/Ominpoint Order)
 - 합병후, 홍콩지분은 17.6%로 감소하고, 비홍콩 외국인지분(17.03%)은 새로 발생
 - paid-in-capital방식(39%) 대신, count-the-shares방식(11.49%)으로 지분계산
 - FCC 간접지분제한(25%)미만이므로, 공익성심사 대상 아님

- DT와 Voicestream 합병 의미
 - Hollings 미연방상원의원은 DT/Voicestream M&A는 통신법310(d)위반이라며 강력히 의문제기
 - 합병전 외국인지분은 통신법 310조 적용대상 아님
 - 합병과정에서 간접지분제한을 초과시, 그 초과분에 한해서만 공익성심사 실시
 - FCC는 비상장사는 paid-in-capital방식, 상장사(publicly held company)는 count-the-shares방식 채택

- DT의 미국개척 전략
 - GSM Belt형성, 동일한 브랜드명인 T-Mobile로 유럽 및 미국시장진출

- 미국유선사업자의 파산절차중에 직접투자
- 높은 독일정부지분(45%)을 가지고 있으나, 미국지분(23%) 소유

□ Global Crossing 파산사례

○ Global Crossing의 구조

- Bermuda법에 의해서 설립된 통신회사로서, 본부는 New Jersey주 Madison에 위치
- 미연방파산법(Chapter 11)에 의한 파산신청(2002년 1월)

○ New GX의 구조

- Bermuda법에 의해서 설립된 회사로서, Global Crossing의 미연방법과 Bermuda법에 의한 파산절차를 받기위하여 설립
- 10명의 Director중에서 ST Telemedia가 8명을 임명

○ ST Telemedia의 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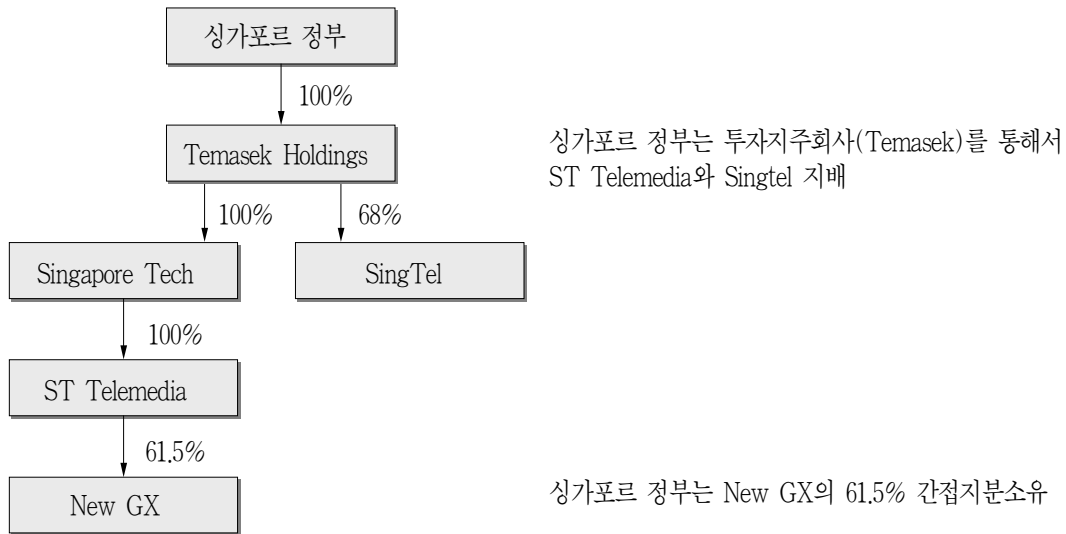
- 싱가포르 통신회사로서 싱가포르정부가 Temasek Holdings Ltd(Temasek)라는 투자지주회사를 통해서 100%지분소유
 - Temasek은 SingTel의 지분을 67.56%소유
 - ※ 싱가포르정부는 투자지주회사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Singtel(67.56%)과 ST Telemedia(100%)를 지배하며, 이같은 지배력 집중현상에 대해서 싱가포르 정부는 두 통신사업자가 법적으로 분리되어 있으며, 각자 독립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다고 주장

○ 미통신법 214(a)와 310(d)하에서 공익성심사

- Global Crossing은 Cable Landing License Act하에서 cable landing 허가의 소유권을 양도하려함

- FCC는 양수인(transferee)을 308조에서 새로운 허가를 신청하는 것과 같은 대우(통신법 제310(d))
- FCC는 310조(a)와 310조(b)(1)~(3)조항을 적용않기로 결정
- 미통신법 310(b)(4) 하에서 공익성심사
 - 미국통신회사에 외국인, 외국법인, 외국정부가 25% 이상의 간접지분을 소유하는 것을 제한
 - 그러나, FCC는 공익성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판단할 경우, 25%이상의 외국인지분을 허용할 재량권 가짐
 - FCC는 2단계(소유권과 투표권)의 테스트를 분리 실시
 - FCC는 WTO회원국의 통신사업자의 간접지분에 대하여 Effective Competitive Opportunities(ECO)³⁾ Test를 버리고, 외국인간접투자가 경쟁에 관한 우려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rebuttable presumption을 가짐
 - 통신법 310조(b)(4)하에 principal place of business 테스트를 실시하여 외국인투자자의 국적 또는 국내시장(home market)을 결정
 - ST Telemedia와 모회사들의 국내시장은 WTO회원국인 싱가포르임
 - ST Telemedia에 대한 싱가포르 정부의 간접지분은 새로운 양수인인 New GX에 어떠한 금전적인 이익이나 미국내 경쟁이나 소비자에게 어떠한 위협을 만들어 내지 않는다고 판단

3) In the Matter of Rules and Policies on Foreign Participation in the U.S. Telecommunications Market, Market Entry and Regulation of Foreign-Affiliated Entities, FCC 97-398(1997) para. 5 참고



○ ST Telemedia의 미국개척 전략

- 파산선고를 받은 미국 통신사업자를 인수
- 싱가포르 통신규제 기관인 IDA는 통신사업자에 대한 외국인 지분제도를 폐지(2000)
 - Singtel과 ST Telemedia에 대한 정부소유 지분을 계속 유지함으로써, 영향력을 계속 유지
- FTA를 전략적 활용⁴⁾
 - New GX는 미국·싱가포르FTA가 Global Crossing인수와 같은 외국인 투자촉진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
 - ※ 싱가포르정부는 미국과의 FTA협상과정에서 ST Telemedia와 Singtel의 완전 민영화를 약속했으나, 2003년 6월 체결후 아직까지 두 통신회사 모두 정부지분 유지

4) 싱가포르는 칠레에 이어서 두 번째로 우리나라와 FTA를 체결한 국가임(2004년 10월 실질타결)

□ Telenor-COMSAT 사례

- COMSAT의 구조
 - Washington D.C.에 설립된 주식회사로서 Lockheed Martin Corporation의 간접종속회사

- Telenor의 구조
 - Telenor ASA는 노르웨이 회사로서, Oslo와 NASDAQ에 모두 상장(2000년 12월)
 - Telenor ASA는 노르웨이정부가 79%의 지분소유
 - 나머지 21%중 14%는 외국인 지분
 - Telenor ASA는 TSSH라는 미국지주회사(U.S. holding company)를 Delaware주에 설립한 후, TSSH는 두개의 또다른 미국법인을 설립함(Telenor Satellite: FCC허가 & Telenor Satellite Services, Inc.: operating compan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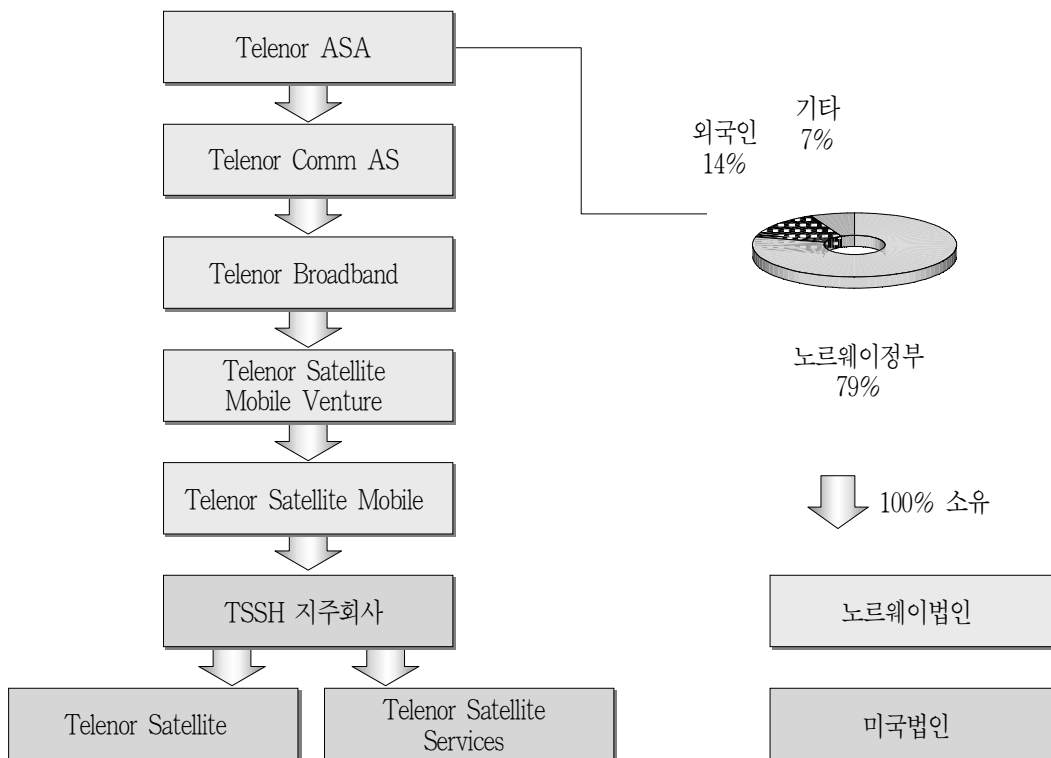
- 미통신법 214(a)와 310(d)하에서 공익성심사
 - FCC는 COMSAT으로부터 Telenor에 무선서비스 허가에 대한 양도에 대해서 공익성심사 실시
 - FCC는 공익에 미치는 손해와 이익 등 모든 것을 고려하여 판단

- 미통신법 310(b)(4)하에서 공익성심사
 - 허가받을 서비스에 대한 법적, 재정적, 기술적 조건들에 대한 사실을 제시해야됨(통신법 제308조)
 - Foreign Participation Order에 의거하여, WTO 회원국으로부터의 common carrier licensee에 대한 외국인투자한도를 높일 수도 있음
 - WTO 회원국으로부터의 간접투자인 경우, 전반적으로 경쟁에 관한 우려를 낳지 않는다는 rebuttable presumption을 가짐

- FCC는 home market을 결정하기 위해서, principle place of business 테스트를 실시
 - Telenor ASA와 종속회사들은 WTO회원국인 노르웨이 통신회사
 - 노르웨이정부의 지분(79%)에 의한 사실상 지배력(de facto control)은 인정하나, 이같은 외국정부지분이 재정적 이익을 부여하거나, 미국내 경쟁 또는 소비자에게 어떠한 위험을 만들지 않으므로 특별한 조건을 부여할 필요가 없다고 봄
 - Telenor는 상장된 주식회사로서, 노르웨이 정부지원금없이 상업적으로 운영
 - 노르웨이는 유럽자유무역연합(EFTA)⁵⁾의 회원국으로서, EU의 정부보조금금지조항을 입법화한 EEA협정에 종속
 - Telenor는 현재 인공위성을 통한 국제무선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으므로, 이같은 서비스의 경쟁을 감소시키지 않음
 - FCC는 “open entry standard”를 적용하고 U.S. common carrier licensee에 대한 간접지분한도를 WTO회원국에 한정하여, 높일수 있음
- FCC의 조건부 허가
- Telenor와 관련 종속회사를 제외한 외국인·외국법인이 Telenor Satellite의 지분을 25%이상 소유하기전에 FCC의 승인을 받아야됨
 - Telenor Satellite은 노르웨이정부의 간접지분이 현재의 수준(79%)을 초과할 경우, 반드시 FCC의 사전승인 필요

5) EFTA는 노르웨이, 스위스,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재 우리나라와 FTA협상 진행중

2. FCC 외국인지분제한 사례분석



○ Telenor의 미국시장 진출전략

- Telenor에 대한 높은 정부지분률(79%)을 여러단계의 종속회사를 설립하여 전략적 접근
 - 통신법 제310(a)와 (b)(1)~(3)를 전략적 우회
 - FCC는 노르웨이정부의 사실상 지배력(de facto control)에 불구하고, 다단계의 종속회사를 거치면서 실질적으로 희석되었다고 판단
 - 미국내의 지주회사를 설립한 후, 그 지주회사를 통해서 새로운 종속회사를 설립
- EFTA의 회원국인 노르웨이는 외국인 지분제한이 없으나, 높은 정부지분률(79%)로 Telenor에 영향력 행사

3. 이슈별 법률검토

□ 미통신법 제310조

- 미통신법 제310조(a)⁶⁾
 - 1912년 통신법(Radio Act of 1912)
 - FCC허가는 미국시민과 국내법인에게만 부여가능
 - 외국정부와 그 대표는 FCC허가를 부여받거나 소유할 수 없음
 - 외국정부의 무선통신사업자에 대한 직접소유금지
- 미통신법 제310조(b)(1)⁷⁾
 - 1912년 통신법(Radio Act of 1912)
 - Common carrier radio 허가에 관한 외국인소유금지
 - non-common carrier허가에 관련된 사항은 제외
- 미통신법 제310조(b)(2)
 - 1912년 통신법(Radio Act of 1912)

6) The station licenses required under this Act shall not be granted to or held by any foreign government or the representative thereof.

7) No broadcast or common carrier or aeronautical en route or aeronautical fixed radio station license shall be granted to or held by

(1) any alien or the representative of any alien;

(2) any corporation organized under the laws of any foreign government;

(3) any corporation of which more than one-fifth of the capital stock is owned of record or voted by aliens or their representatives or by a foreign government or representative thereof or by any corporation organized under the law of a foreign country;

(4) any corporation directly or indirectly controlled by any other corporation of which more than one-fourth of the capital stock is owned of record or voted by aliens, their representative, or by a foreign government or representative thereof, or by any corporation organized under the laws of a foreign country, if the Commission finds that the public interest will be served by the refusal or revocation of such license.

- 외국법인의 직접소유금지
- non-common carrier허가에 관련된 사항은 제외
- 미통신법 제310조(b)(3)
 - 1927년 통신법(Radio Act of 1927) 개정사항
 - Common carrier radio허가에 관한 외국인, 외국법인, 외국정부의 직접지분제한(20%)
 - 미국법인을 통한 간접지분 제외
 - non-common carrier허가에 관련된 사항은 제외
 - 소유권(ownership)과 투표권(voting rights) 구분
- 미통신법 제310조(b)(4)
 - 1934년 통신법(Communications Act of 1934) 개정사항
 - FCC허가를 받은 무선사업자를 지배하는 국내지주회사에 대한 외국인 소유 제한
 - Common carrier허가에 관한 간접지분제한(25%)
 - 소유권(ownership)과 투표권(voting rights)으로 구분
 - 외국인간접지분 25%초과시, FCC는 공익성심사를 실시하고, 공익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 초과소유 인정
 - non-common carrier허가에 관련된 사항은 제외
 - 허가받을 서비스에 대한 법적, 재정적, 기술적 조건들에 대한 사실을 제시해야됨(통신법 제308조)
- 미통신법 310(b)(4) 하에서 공익성심사
 - 미국통신회사를 외국인, 외국법인, 외국정부가 25% 이상의 간접지분을 소유하는 것을 제한
 - 그러나, FCC는 공익성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판단할 경우, 25%이상의 외국

인지분을 허용할 재량권 가짐

- FCC는 2단계(소유권과 투표권)의 테스트를 분리 실시
 - FCC는 WTO회원국의 통신사업자의 간접지분에 대하여 ECO Test를 버리고, 외국인간접투자가 경쟁에 우려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rebuttable presumption을 가짐
 - 통신법 310조(b)(4)하에 principal place of business 테스트를 실시하여 외국인투자자의 국적 또는 국내시장(home market)을 결정

○ 미통신법 제310조(d)⁸⁾

- M&A관련 지분제한
 - 지배력은 실질적인 지배력을 의미하며, 과반수주식소유 등을 포함한 직·간접 지배력을 모두 포함⁹⁾
- 공익성심사제도 적용

○ 미통신법 제214조(a)

- 지배적사업자의 Vertical harm 규제
- 지배적 외국사업자가 제휴하고 있는 미국회사를 제외한 다른 경쟁회사에 대한 차별금지(vertical harm)
- 제휴한(affiliated) 외국사업자(foreign carrier)가 미국과의 국제루트의 접점에 대한 시장지배력 확인
- Foreign Participation Order에 의하면, 미국사업자(U.S. carrier)는 필수설비를 지배하는 외국사업자와 제휴를 하는 경우, 지배적 국제사업자(dominant

8) No construction permit or station license, or any rights thereunder, shall be transferred, assigned, or disposed of in any manner, voluntarily or involuntarily, directly or indirectly, or by transfer of control of any corporation holding such permit or license, to any person except upon application to the Commission and upon finding by the Commission that the public interest, convenience, and necessity will be served thereby.

9) 47 CFR §63.09(b)

international carrier)로 분류됨

- 비지배적사업자로 분류되기 위해서는, 미국사업자는 외국사업자가 시장점유율이 50%미만이라는 점을 밝혀야만됨
- 유선설비를 소유하지 않고 무선설비만을 소유한 외국사업자는 미국시장의 경쟁에 불리하게 영향을 줄 충분한 시장지배력이 있다고 보지않음(1998 Section 214 Streamlining Oder)

□ 공익성심사

○ Public Interest, Necessity, & Convenience

- 미통신법의 기본개념
- 명확한 법적정의를 없음
- FCC는 필요시 공익성심사를 실시할 재량권보유¹⁰⁾

○ 외국인 간접투자 지분률 없음

- 25%초과시, FCC는 공익성심사 실시
- WTO양허안에 공익성심사 제도 표기안함

○ FCC는 공익성심사를 내외국인에게 동등하게 적용

- 경쟁·다양성과 같은 공익성기준을 적용하고 외국인보다 내국인의 통신사업자 지분취득을 더 많이 기각
- 외국인이 공익성심사에서 기각된 경우는 Hutchison Telecommunications Ltd 가 Global Crossing Ltd의 주식 31%취득요구가 거절된 경우뿐(2002년 8월)

○ 외국인 사업자의 시장진입 지연효과

- FCC의 오랜 심사기간과 승인과정에 따른 행정적 부담 및 시간지연

10) 47 USC §154(i)

4. 미국통신 시장개척 로드맵

□ 국경간공급(Mode 1: Cross-border Supply)

- 인공위성을 통해서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 미국내의 다른 통신사업자와 제휴를 하지 않더라도, 미통신법 제214조의 authorization을 받아야함
 - 미국내 통신설비를 직접 소유하지 않는 경우,
 - FCC의 외국인지분제한 제도를 전략적으로 우회하는 접근방법(PanAmSat Carrier Services)
- 해저케이블을 통해서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 FCC는 미국내 authorized carrier¹¹⁾의 지위를 가진 사업자와 외국에 있는 foreign carrier의 지위를 체크
 - foreign carrier는 당사국 규제기관으로부터 국제통신서비스 관련허가를 받은 사업자¹²⁾
 - 미국사업자와의 상업적약정은 필요하지 않으나, 미국사업자는 FCC에서 authorized carrier의 지위 획득 필요
 - 국제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미국사업자(authorized carrier)는 foreign carrier의 자국시장에서의 시장지배력(50%)에 따라 지배적 또는 비지배적 사업자로 분류¹³⁾

11) 47 CFR §63.11 참고

12) 47 CFR §63.09(d)

13) 47 CFR §63.10(a)

□ 상업적주재(Mode 3: Commercial Presence)

- 직접 미국통신회사의 지분을 매입하는 경우(직접지분소유)
 - DT의 경우처럼, 파산 또는 M&A과정에 미국통신회사에 직접 투자형식으로 진출
 - 직접지분제한(20%) 초과금지

- 미국법인을 설립하고, 간접적으로 미국 통신회사의 지분을 매입하는 경우(간접지분소유)
 - Vodafone과 NTT Docomo와 같이, 간접지분소유 가능
 - 간접지분제한(25%)을 초과할 경우, 공익성심사 적용

- 미국 지주회사와 운영회사(U.S. operating company)를 설립하고,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서비스제공)
 - DT의 T-Mobile의 경우처럼, 국내외 동일한 브랜드명을 사용가능
 - 미통신법 214조 허가필요(domestic interstate communications common carrier)
 - 국내 또는 주간(interstate) 서비스제공
 - 통신서비스 제공을 위한 국내전송망의 건설, 획득, 또는 운영시 사용하는 주과수에 대한 FCC 허가필요¹⁴⁾
 - 비디오 프로그램 제공시는 제외¹⁵⁾
 - ※ FCC는 무선사업자에 대한 직접지분(20%)을 제한하고, 간접지분률이 25% 초과시 공익성심사를 실시하나, 거의 모든 경우에 외국인초과분을 승인. 사실상 간접으로 통신사업자의 지분 100%소유가능

14) 47 CFR §63.01

15) 47 CFR §63.02

□ 부가서비스(Value-added Services)

○ 재판매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 FCC로부터 통신법 214조 허가필요

※ 미국은 WTO양허안상 부가통신서비스에 대한 규제 없으나, 신규서비스에 대한 부가서비스 적용여부에 불확실성 존재, 인터넷서비스인 경우, FCC는 정보서비스(information services)로 분류하고 규제하지 않음¹⁶⁾

16) 47 USC §154(20) 참고

5. 시사점

- FCC는 외국인지분제도를 비대칭적으로 적용
 - 유선사업자에 대한 외국인 지분제한 없음
 - 무선사업자에 대해서 직접제한(20%)과 지주회사에 대한 간접제한(25%)
 - 외국인(foreign)이 아닌 alien의 개념사용하며, 영주권자(permanent resident)를 외국인 취급

- 외국인은 미국무선통신사업자를 기술적으로 100%소유가능
 - 직접지분제한(20%) 초과분에 대해서는 미국법인을 통한 간접지분 형식으로 나머지(80%) 지분소유가능
 - 간접지분제한(25%) 초과분은 FCC는 공익성심사적용

- FCC는 간접지분제한(25%)을 초과하는 경우, 공익성심사 실시하나, 거의 모든 경우에 외국인지분에 대해 불리한 판결을 내린 선례가 없음
 - 만약 외국인투자자가 차별을 받는 경우가 있을 경우, 미국시장 투자감소 우려
 - 사실상 간접지분제한은 없다고 볼 수 있으며, 외국인제휴(foreign affiliation)의 제한사항
 - 직접투자보다는 미국법인 설립을 통한 간접투자가 보다 효과적 전략

- FCC는 외국정부 간접지분도 관대하게 수용
 - 대부분의 해외기간통신사업자들은 정부지분 유지
 - NTT(46%), Telenor(79%), Singtel(68%), DT(45%)
 - 일본의 경우, NTT법을 통해서 정부최소지분을 외국인지분제한과 같은 1/3로 각각 규정하고, 외국인간접지분에 대한 FCC 공익성심사 대체효과
 - 싱가포르의 경우, 통신사업자에 대한 외국인 지분제한제도를 철폐했으나, 일정한도의 정부지분을 소유함으로써, FCC 공익성심사 대체효과

- FCC의 비대칭적 외국인지분제한은 통방융합의 시대의 도래에 따라, 불확실성 증가
 - 미국서비스 시장으로의 진출에 많은 어려움 예상
 - FCC규제와 관련 허가절차에 대한 철저한 사전검토 필요
 - 한·미FTA 관련 양국 외국인지분제도와 공익성심사에 대한 benchmarking 필요

참 고 문 헌

이연호, 기간통신사업 외국인 지분제한 완화에 따른 KT 대응방안, 2003. 11

www.sktelecom.com

www.telenor.com

www.sttelemedia.com

www.singtel.com

www.vodafone.com

www.verizonwireless.com

www.verizon.com

www.attwireless.com

www.ida.gov.sg

www.fcc.gov(미연방통신위원회)

www.nttdocomo.co.jp

www.ntt.co.jp

www.sec.gov

www.etnews.co.kr(전자신문)

www.dt.co.kr(디지털 타임스)

www.hovers.com